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10호 2017. 10. 25(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58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 2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4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 10.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특별휴가 종류에 “부모휴가제” 추가(안 제23조 제11항)
 - 만4세 이하(매년 1월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 부여
 -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 합산 5일의 부모휴가 부여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삼곡동) / ☎ 032-560-4093,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특별휴가 종류에 “ 부모휴가제 ” 추가(안 제23조 제11항)
 -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 부여
 -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 합산 5일의 부모휴가 부여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은 “별표 2””를 “공무원은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차별없”을 “차별 없”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탈하기 못하며”를 “이탈할 수 없으며”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 복무에 관하여”를 “사람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 하여야”를 “통보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연구기관등”을 “연구기관 등”으로,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장등)”을 “(복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분증 발급”을 “신분증 발급”으로,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휴 가”를 “휴가”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직기간이라함은”을 “재직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 일수를 당해”를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 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bigcirc \quad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일수}$$

제20조제3항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를 “전염병에 걸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만40세”를 “만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만 4세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정 치 운 동”을 “정치운동”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 및 그 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

제29조제1항제3호 중 “하기위”를 “하기 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장 <u>총칙</u></p> <p>제2조(복무선서) ① (생략)</p> <p>②제1항의 선서는 “<u>별표 1</u>”의 <u>선서문에 의한다.</u></p> <p>③ (생략)</p>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생략)</p> <p>②<u>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5조(친절·공정) ①·② (생략)</p> <p>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u>차별없이</u>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u>그외</u>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p>	<p>제1장 <u>총칙</u></p> <p>제2조(복무선서)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선서는 <u>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u>공무원은 별표 2</u>----- -----.</p> <p>제5조(친절·공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차별 없</u> ----- --.</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u>그 외</u> ----- ----- ----- ----- -----</p>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기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생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

-----.

②-----
----- 그 밖에 -----

-----.

③-----
----- 이탈할 수 없-----
며-----
----- 아니 -----
된
다.

④----- 범
위-----.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 아니 -----
된다.

②-----

----- 그 외-----

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

③-----
----- 지체 없이 -----

-----.

제9조(겸임근무) ①-----
----- 사람은 -----

-----.

②----- 사람이 -----

해당 -----
-----.

제10조(파견근무) ①-----

----- 사람의 복무는 -----
-----.

②-----
사람이 -----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등) ① (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휴 가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 해당 -----

통보하여야 ----.

③-----

----- 연구기관 등-----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그

밖의 -----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분증 발급 -----
----- 「공무원증규칙」-----

제3장 휴가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직기간이란 -----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2. (생략)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 -----

다음 해-----

-----.

1.·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별표 4-----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소속 공무원-----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
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
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
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
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
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

-----.

②-----
----- 연 2회
-----.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 직원-----

-----.

⑤-----
----- 해당 -----

----- 범위 -----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3에 의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⑥----- 해
당 -----

----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
가일수를 해당 -----
-----.

----- 따른 -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지각·조퇴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범위-----
-----.
----- 지각·조퇴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

②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

②-----

----- 요양이 필요한

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
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
석하는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엔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하고, 휴직기
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소
속 직원-----

-----.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 -----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
음)

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 -

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생략)

③ 삭제

④·⑤ (생략)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

---. -----

1. -----

----- 따른 -----

2. -----

----- 만 4

0세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따른 -----

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 제

⑧ (생 략)

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⑩ (생 략)

<신 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미
만: ---

2. ----- 미
만: ---

3. ----- 이상: -----

⑩ (현행과 같음)

⑪ 만 4세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

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5장 정 치 운 동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 략)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
한다.

-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
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 2. (생 략)

-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
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
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에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을 말한다.

범위

-----.

제5장 정치운동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
제2항-----

- 1. 2. (현행과 같음)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

- 1. 정당의 조직, 조직 및 그 밖
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

- 2. (현행과 같음)

- 3. -----
----- 하기 위-

②-----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458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공고

2017년도 제4차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서정본이 송달되지 못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서 정보 송달
2. 공고기간: 2017. 10. 25. ~ 11. 9.(15일간)
3.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구청계시판, 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소	보상대상 물건	사유	비고
1	정희영 (관계인)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24,103동1804호 (철산동,철산푸르지오하늘채)	인천시 서구 왕길동 153-1 사무소(2층)	수취인부재	반송
2	변병민 (소유자)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405동 905호	인천시 서구 광길동 153-1 사무집기 외	수취인불명	반송

5. 근거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7.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건설심사과(☎032-440-3733)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3)